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재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2167 발 의 년 월 일:2024년 10월 15일 발 의 자:김재진 의원(1명)

찬 성 자:곽향기, 김영철, 김지향,

김태수, 남궁역, 남창진, 박 석, 박중화, 박춘선, 윤영희, 이봉준, 이영실, 장태용, 최진혁, 허 훈 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동물의 건강, 행동양태 등 동물의 기 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'서울시 기질평가위원회'를 구성하고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-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현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했던 동물이 해당 직무에서 퇴역(은퇴)한 경우 입양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봉사동물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제16호 신설)
- 나. 서울특별시 기질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 의5 신설)
- 다. 위원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의5제2 항 및 제3항 신설)
- 라. 위원에게 지급할 수당·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의5제4항 신설)
- 마. 국가나 사람을 위해 봉사하거나 봉사한 봉사동물의 입양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5조제5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동물보호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"봉사동물"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조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.

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조의5(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서울 특별시 기질평가위원회(이하 "기질평가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영 제14조의3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(辭任)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(前任)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- ③ 위원장은 심의 업무를 총괄한다. 단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④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한 위원에게는 「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⑤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개의 소유자 부담으로 하며,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부 기준 및 지급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따른다.

제8조제3항 중 "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조"를 "영제6조"로 한다.

제10조제3항 단서 중 "영 제5조"를 "영 제6조"로 한다.

제16조제5항제1호 중 "영 제5조"를 "영 제6조"로 한다.

제17조제2항 단서 중 "영 제5조"를 "영 제6조"로 한다.

제2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시장 또는 구청장은 봉사동물로서 은퇴한 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,
1. ~ 15. (생 략)	1. ~ 1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6. "봉사동물"이란 법 제2조제6
	호에 따라 「장애인복지법」 제
	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등
	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
	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
	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(이하
	"영"이라 한다) 제3조로 정하는
	동물을 말한다.
<u><신 설></u>	제7조의5(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・
	운영)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
	라 서울특별시 기질평가위원회(이
	하 "기질평가위원회"라 한다)를
	<u>둔다.</u>
	② 영 제14조의3에 따른 위원의
	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
	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(辭任) 등
	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
	임기는 전임(前任)위원 임기의 남
	은 기간으로 한다.
	③ 위원장은 심의 업무를 총괄한

제8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제8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) ① · ② (생 략)

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동물보호 수준 등 을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하며, 평 가에는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(이 하 "영"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 추천인사 및 명예동물보 호관이 참여하여야 한다.

④ ~ ⑥ (생 략)

다. 단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.

④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한 위원에게는 「서울시 인재개발 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•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⑤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개의 소유자 부담으로 하며,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부 기준 및 지급 범위는 농림축산식 품부 고시를 따른다.

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(3)	
	- <u>영 제6조</u>
	··
_	

4) ~ 6)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동물의 구조·보호) ①・② 제10조(동물의 구조·보호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 (생 략) 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영 제 ----- 영 제6조 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 보호관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 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④ (생 략) ④ (현행과 같음) 제16조(동물의 반환 등) ① ~ ④ | 제16조(동물의 반환 등) ① ~ ④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⑤ 법 제45조의 "동물을 애호하는 자"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 1. 영 제6조----속된 사람 2. · 3. (생략) 2. · 3. (현행과 같음) 제17조(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) 제17조(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) ① (생 략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

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

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영 제5조</u>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, 소유권이 자치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25조(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) ① 저 ~ ④ (생 략)

<신 설>

<u>영 제6조</u>
,
③ (현행과 같음)
세25조(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) ①
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시장 또는 구청장은 봉사동물
로서 은퇴한 동물의 입양 활성화

를 위하여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

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

지원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의5(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) 및 제25조 (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)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
- 2. 미첨부 근거 규정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
- 3. 미첨부 사유
 - □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 -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의5(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) 및 제25조 (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)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의 지원 대상, 규모 및 위원회의 구성 기준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다만, 유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비용을 참고자료로 제시함

※ 참고자료

-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을 10명(공무원 2명 포함)으로 구성하여 연 2회(상·하반기)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하였을 때 운영비용은 5년간 19,000천원으로 추정
- 기질평가위원회 = 19,000천원
 - = 참석수당 + 업무추진경비
 - = 16,000천원 + 3,000천원
- 참석수당 = 16,000천원
 - = 수당단가 × 지급인원 × 연2회 × 5년
 - = 200천원 × 8명 × 2회 × 5년
- * 참석수당 단가: 「서울시 예산펀성 운영기준」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
 - 업무추진경비 = 3.000천원
 - = 경비단가 × 지급인원 × 연2회 × 5년
 - = 30천원 × 10명 × 2회 × 5년
- * 업무추진경비 단가: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(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) [별표1]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7조 관련)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계분석관 김지혜

2 02-2180-7953

e-mail: kjh0123@seoul.go.kr